관광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연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37 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정연욱·송언석·임이자

박상웅 • 박성훈 • 곽규택

서지영 · 엄태영 · 이성권

김선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,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.

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·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0조).

법률 제 호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1항제2호 중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"를 "시·도 조례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 각 호"를 "다음 각 호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항제1호 ·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
- 2.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,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지역일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)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·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0조(관광특구의 지정) ①관광	제70조(관광특구의 지정) ①
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	
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・군	
수·구청장의 신청(특별자치시	
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	
다)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지정	
한다.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	<u>.</u>
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·도	
내에서 둘 이상의 시・군・구에	
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	
・군수・구청장이 공동으로 지	
정을 신청하여야 하고, 둘 이상	
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	
는 해당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	
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	
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	
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	2. <u>시·도 조례로</u>
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,	
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	
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	
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	
지역일 것	

3. • 4. (생략)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「지방자치법」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이하 "특례시"라 한다)의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(생 략)

3. · 4.	(현행과	같음)
---------	------	-----

2
<u>다음 각 호</u>
<u>.</u>

- 1. 제1항제1호·제3호 및 제4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<u>것</u>
- 2.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,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
- ③ (현행과 같음)